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하여 처벌받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선원의 취업주선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430호, 공포 2021. 8. 17. 시행 2022. 2. 18)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개정(안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2)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법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의 취업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3
--	--------	--	--	--	--	--	--	--	--	--	--	--	--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47